



문서번호	세무1과-15278
결재일자	2015. 10. 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418호

주무관	세외수입팀장	세무1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
문신환	배은화	양동남	박기웅	10/13 이비오	
협조					

- 세입목표 달성 및 인센티브 평가 대비 -
201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보고

2015. 10.



성 동 구

(세무1과)

- 세입목표 달성 및 인센티브 평가 대비 -

201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보고

구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및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
201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.

I 추진개요

- 일 시: 2015. 10. 7.(수) 14:00
- 장 소: 5층 세미나실
- 주 재: 부구청장
- 참석대상 22명(참석 20명, 불참 2명)
부구청장, 세무1과장, 세외수입팀장, 세외수입 부과부서 19개 팀장
(별첨 3: 세외수입 보고순서, 참고)

II 세부 보고 내용

- 목표대비 결산전망액 감소, 증가 원인 분석
 - 재무과: 용담동청계현대지역주택조합 공유지 50억원과 사근동 남이사당부지 30억원 미매각 등으로 결산전망액 감소
 - 사회복지과: 지출금반환비는 체납이 주로 저소득층 일용직근로자로 징수율이 낮고 재산없어 징수율 낮아 결산전망액 4천만 원 감소
 - 공동주택과, 건축과: 부동산거래부진이나 고액체납자 납부의욕 상실 무단 대수선, 용도변경 등 생계형 위법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
 - 안전관리과: 도로사용허가를 득하여 도로사용료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하여 도로변상금은 감소
 - 토지관리과: 고가 부동산(갤러리아 포레)에서 과태료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부과금액이 크게 상승하나 일시적 상승

○ 현년도 체납 원인 분석 징수율 제고 방안

- 사회복지과: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장비용 분할 납부 유도
- 공동주택과, 건축과: 체납 독촉, 현장방문 독려,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
- 안전관리과: 업체 폐업이라든지 대표자 잦은 변경으로 체납되어 독촉고지서 발송, 분할납부 독려, 현장방문 독려
- 교통행정과: 과태료 종류, 부과 근거법이 다양하고 특히 책임보험과태료가 체납의 80%를 차지하고, 대포차 및 폐업 법인의 차량 증가로 체납 증가
- 최근 연식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래된 차량도 적극 압류로 징수율 제고

○ 체납처분 적극 실시

- 안전관리과: 체납금액 발생시 부과고지, 독촉고지 후 적극 채권확보할 것
여의치 않으면 분할 납부 독려, 현장 방문 징수독려 적극 권장

○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취지 설명(세무1과장)

- 세입구성 2,640억 원 중 세무분야 1,444억 원(39.6%), 세외분야 520억 원 (14.3%), 보조금 1,409억 원(38.7%), 보전수입, 내부거래 267억 원 (7.3%)로 세금은 강제징수인데 비해, 세외수입은 대가에 대한 부과하므로 또는 노력한 만큼 세입이 증가하므로 세금보다 철저히 징수하여야 함.
- 금년도 연도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 짐(다음해 2월 말 → 12월 말)
- 서울시 세외수입인센티브 사업 일환:
총금액 5억, 절대평가방식: 자치구당 3,000만 원 예상됨
- 적기 채권확보 요청: 독촉고지 후 납기 경과하면 바로 압류 들어가야 함

Ⅲ 부구청장 당부사항

- 남은 기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, 특히 세외 수입 부과부서 팀장님들이 체납징수에 힘써주시길 바람.
 - 체납자 관리를 담당1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의치 않을 경우 팀원, 부서차원에서 여러명에게 배분, 독려방법을 알려 유선독려, 현장방문 독려 한다면 체납 징수가 훨씬 수월할 것임
- 징수노력도 평가기준 현실화
 - 체납고지서 몇 건 발송 보다는 몇 회 발송으로, 분납독려 몇 건 보다는 전체금액 중 일부 납부금액, 현 체납금액으로 표시하여 기록 관리 하면 다음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것임
- 난해한 문구 보다는 현실적인 대책 강구
 - 법적근거 마련 검토 등 난해한 표현 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대책수립 및 추진하기 바람

- 붙 임
- 1) 201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자료 1부.
 - 2) 보고회 개최 사진 1부.
 - 3) 세외수입 보고순서 1부. 끝.